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80
----------	-------

발의연월일 : 2025. 7. 31.

발 의 자 : 배준영 · 이양수 · 이인선

김정재 · 추경호 · 이종배

최은석 · 김종양 · 최수진

조승환 · 이상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붕괴의 범위에 지반침하가 포함됨을 명시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이 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나목 중 “붕괴”를 “붕괴(지반침하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 한 피해	----- ----- -----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